

(가칭) 연구 공로상 수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목적

본 규정은 대한민국 흉부외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공이 큰 원로 연구자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'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'가 제정한 (가칭) 연구공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상의 명칭

본 상의 명칭은 '(가칭)연구공로상'이라고 칭한다.

제3조 상의 성격

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발전에 학술 및 기타 분야를 통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수상 인원

매년 1명을 수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수상자 자격 조건

제1조 수상자 자격

- 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30년이 경과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조 수상대상 선정

- ① 수상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.
- ② 수상 대상자 심사기준은 논문점수의 합계를 이용하며,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은 수상 대상자가 제1저자 혹은 교신 저자인 논문으로 한정하고 전문의 취득 이후 간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논문 점수는 SCI와 SCI-E 등재 논문은 가장 최근의 영향력 지수 (Impact Factor)를 사용하며, SCI와 SCI-D등재 비 등재 논문 중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지는 경우 편당 0.5 점을 논문 점수로 사용한다.

- ④ 총괄 논문 점수를 합산 한 점수 참고하여 후보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3장 수상자 선정

제1조 심사위원회 구성

- ① 심사는 2차에 걸쳐 시행한다.
- 1차심사: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.
 - 2차심사: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.
- ② 일차심사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이, 그리고 이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장이 각각 심사위원장을 겸한다.
- ③ 심사위원장이 수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.

제2조 수상자 결정

- 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소정의 심사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장 상의 수여

제1조 상금 및 상의 수여

- ① 상의 수여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이 수여한다.
- ② 상의 시상은 매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시상한다.

부 칙

- 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또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의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2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 결의나 일반 관행에 따른다.
- 3)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.